

제334회 정례회
2014. 9. 30(화)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27

2014. 9. 30.(화)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박병진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4년 9월 5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9월 16일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병진 의원)

가. 제안이유

-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 삭제(안 제12조)
 - 개인,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조례의 규제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용어 순화 등
 - (안 제2조, 제9조부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문홍열)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현행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요금 징수 조항은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충청북도 내 각 시군에서도 무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③ 개인,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제12조제3항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개정권고가 있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명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을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학하는 때”를 “통학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22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u>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신도시, 관광단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u>법 제6조</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u>법 제12조</u>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략) ② (생략)	-----.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u>기타</u>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u>장애인용</u>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그밖에 -----. --- 장애인용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u>자에 대하여</u>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 ② (생략)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u>상시</u>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6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u>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이하 “영”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한다.	----.	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u>통학하는 때에는</u>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④ ----- ----- <u>대해서</u> ----- ----- -----.	-----	----- <u>통학하는 경우</u> -----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 ② (생 략) ③ 개인,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④ (생 략)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 ② (생 략) ③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필요한 ----- 범위-----.
제13조(자전거대여소 설치) ① (생 략)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대여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범위 -----.	제19조(자전거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자전거의 등록) ① ----- ----- 법 제22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 략)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 -----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자 료

1. 각 시·도별 자전거 주차요금 정수 조항 현황

번호	시·도	주차요금 정수 조항		비 고
		여	부	
1	서울특별시			- 시 조례 없음(구청별 조례 제정)
2	부산광역시	○		- 무료
3	대구광역시	○		- 무료
4	광주광역시	○		- 무료 -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정수 할 수 있음
5	대전광역시	○		- 무료 - 관리 운영을 위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6	울산광역시	○		- 무료 -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
7	세종시	○		- 무료
8	경기도	○		- 필요시 규칙으로 정수할 수 있음
9	강원도	○		- 무료
10	충청북도	○		- 무료 - 개인,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시 군 조례로 정하여 정수
11	충청남도	○		- 무료
12	전라북도		○	
13	전라남도	○		- 무료 -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
14	경상북도	○		- 무료 -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
15	경상남도		○	
16	제주도	○		- 무료

2. 각 시·군별 자전거 및 주차요금 정수 조항 현황

번호	시·도	주차장 현황 (개 소)	주차요금 정수 조항		비 고
			여	부	
1	청주시	510	○		- 무료
2	충주시	442	○		- 무료
3	제천시	54	○		- 무료
4	보은군	7	○		- 무료 -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
5	옥천군	32	○		- 무료 -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
6	영동군	106			- 조례 없음
7	증평군	36	○		- 무료
8	진천군	17			- 조례 없음
9	괴산군	31	○		- 무료
10	음성군	13			- 조례 없음
11	단양군	14			- 조례 없음